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선거비용 관련 금전채권 소멸시효 상향 등〉
■ 나경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449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나경원의원 등 36인
2. 제 안 일 : 2025. 2. 26.
3. 회 부 일 : 2025. 2.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급 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선거사범 10명 중 3명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 7월 기준 미반환 기탁금과 선거비용보전금은 총 229억 6,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선거사범 10명 중 약 3명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다시 공직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거나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등 도덕적 해이도 나타나고 있음.

선거당국이 징수해야 하는 이러한 비용의 소멸시효는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5년으로, 관할세무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임.

이에 당선무효 등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체납이 있는 사람은 교육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징수 등의 소멸시효를 20년으로 상향하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 관련 체납사실을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함. 이를 통하여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선거비용 반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①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 등 선거 관련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20년으로 상향하고, ②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등의 체납이 있는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등록은 무효로 하며, ③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등의 체납자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 규정¹⁾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

현 행	개정안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6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제82조의2, 제82조의4부터 제82조의7까지, 제85조, 제86조(제2항제2호 단서·제3호 및 제6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87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8조의2, 제109조부터 제122조까지, 제122조의2, 제135조(제1항 단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 ----- ----- ----- ----- ----- -----제14조의2, 제15조-----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제50조 ----- ----- ----- ----- ----- ----- ----- ----- ----- ----- ----- -----

현행	개정안
서는 제외한다), 제135조의2, 제146조, 제146조의2,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제149조의2, 제151조부터 제159조까지, 제161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66조의2, 제167조부터 제186조까지, 제191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11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19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62조의2, 제262조의3,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 제265조의2, 제266조부터 제270조까지,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1조의2, 제272조, 제272조의2, 제272조의3, 제273조부터 제277조까지, 제277조의2, 제278조, 제279조 중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후보자 및 무소속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③ (생략)	----- ----- ----- ----- ----- ----- ----- ----- ----- ----- ----- -----제278조부터 제280조까지----- ----- ----- -----.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의 선출, 선거구선거관리 등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규정²⁾하면서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중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준용규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³⁾.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2208447)

2) 제6장 교육감선거(제43조부터 제50조의2까지)

3)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6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9

개정안은 나경원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47호, 이하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선거 관련 개정규정(안 제14조의2, 제49조, 제49조의2, 제52조 및 제280조)을 ‘「공직선거법」의 준용규정’에 열거하여 교육감선거에도 적용토록 하려는 것임4).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선거 관련 범죄로 당선무효 등이 된 경우 기탁금과 선거비용보전비용 등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56).

-
- 조부터 제82조까지, 제82조의2, 제82조의4부터 제82조의7까지, 제85조, 제86조(제2항제2호 단서·제3호 및 제6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87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8조의2, 제109조부터 제122조까지, 제122조의2, 제135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35조의2, 제146조, 제146조의2,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제149조의2, 제151조부터 제159조까지, 제161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66조의2, 제167조부터 제186조까지, 제191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11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19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62조의2, 제262조의3,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 제265조의2, 제266조부터 제270조까지,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1조의2, 제272조, 제272조의2, 제272조의3, 제273조부터 제277조까지, 제277조의2, 제278조, 제279조 중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4) 이 법률안은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5) 제135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을 보전함에 있어서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른 회계보고서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 ②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할 비용중 그 위반행위에 소요된 비용 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보전하지 아니한다.
- ③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당,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연설회원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가 제261조제9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이 법에 따라 보전할 비용 중 그 기부행위에 사용된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 ④제2항에 규정된 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위반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전을 유예한다.
- ⑤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보전비용액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⑥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5항 후단의 기한 안에 해당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제납세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 6)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

그런데 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기탁금과 선거보전 비용 등 선거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다시 공직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거나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 현황 >

(단위: 명, 백만원)

선 거 명	반환대상		반환완료		반환진행(미반환)		소멸시효 완성	
	인원 (교)	금액 (교)	인원 (교)	금액 (교)	인원 (교)	금액 (교)	인원 (교)	금액 (교)
교육감 선거(2008년)	1	2,885	-	1,888	1	997	-	-
제17대 국회의원선거(2004년)	6	543	6	543	-	-	1	92
제18대 국회의원선거(2008년)	9	991	9	991	-	-	1	136
선 거 명	반환대상		반환완료		반환진행(미반환)		소멸시효 완성	
	인원 (교)	금액 (교)	인원 (교)	금액 (교)	인원 (교)	금액 (교)	인원 (교)	금액 (교)
제19대 국회의원선거(2012년)	15	2,036	14	1,848	1	188	2	247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년)	33	3,841	24	2,947	9	894	-	-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년)	5	723	4	645	1	78	-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6년)	75	2,601	74	2,537	1	64	12	217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0년)	77 (4)	12,707 (7,463)	71 (0)	5,569 (639)	6 (4)	7,138 (6,824)	33 (1)	2,798 (1,361)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년)	97 (9)	10,392 (6,281)	75 (4)	5,401 (1,828)	22 (5)	4,991 (4,453)	1	4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년)	60 (2)	4,811 (1,513)	42 (0)	2,249 (28)	18 (2)	2,562 (1,485)	-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45 (3)	5,148 (2,772)	24 (0)	1,442 (1)	21 (3)	3,706 (2,771)	-	-
총 계	423 (18)	46,678 (18,029)	343 (4)	26,060 (2,496)	80 (14)	20,618 (15,533)	50 (1)	3,538 (1,361)

() 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반환 대상자와 반환대상 금액 등을 말함.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하여야 하고, 당해 정당·후보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당해 정당·후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정당에 있어서는 중앙당의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보전비용 미반환자 중 기타 공직선거 출마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번	당선무효형 받은 선거	반환대상 금 액	반환금액	미반환금액	재출마 선거
1	제4회 지선	19	-	19	제6회 지선(낙선) 제7회 지선(낙선)
2	제4회 지선	26	-	26	제6회 지선(낙선)
3	제4회 지선	12	9	3	제6회 지선(낙선)
4	제4회 지선	24	-	24	제6회 지선(당선)
5	제4회 지선	21	-	21	제6회 지선(낙선) 제7회 지선(낙선)
6	제4회 지선	17	-	17	제7회 지선(당선) 제8회 지선(낙선)
7	제5회 지선	128	118	10	제7회 지선(낙선)
8	제5회 지선	85	-	85	제7회 지선(낙선) 제21대 국선(낙선)
9	제5회 지선	37	-	37	제7회 지선(당선) 제8회 지선(당선)
10	제5회 지선	83	-	83	제7회 지선(당선) 제8회 지선(사퇴)
11	제5회 지선	110	-	110	제8회 지선(낙선)
12	제5회 지선	21	-	21	제7회 지선(낙선)
13	제5회 지선	32	-	32	제7회 지선(당선) 제8회 지선(당선)
14	제5회 지선	105	-	105	제8회 지선(낙선)
15	제5회 지선	80	-	80	제7회 지선(낙선) 제8회 지선(낙선) 제21대 국선(낙선)
16	제5회 지선	29	-	29	제7회 지선(낙선) 제8회 지선(낙선)
17	제6회 지선	33	-	33	제8회 지선(당선)
18	제6회 지선	111	1	110	제8회 지원(낙선)
19	제6회 지선	24	-	24	제8회 지선(낙선)
20	제6회 지선	136	-	136	제22대 국선(낙선)
21	제18대 국선	164	28	136	제6회 지선(낙선)

성명 등 개인정보 대신 연번으로 대체

- 노란색 셀 : 소멸시효 완성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의 공정성 제고 및 선거비용의 원활한 반환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음.

우선 공직선거법 개정안(안 제14조의2)은 선거 관련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20년으로 상향하여 별도로 정하려는 것임.

< 공직선거법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소멸시효) 이 법에 따른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는 현행 「국가재정법」⁷⁾ 및 「지방재정법」⁸⁾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인 5년보다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라 소멸시효를 상향하는 경우 기탁금, 선거보전비용 등 선거비용 관련 반환금의 환수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개정 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다만,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서는 「국세기본법」, 「지방

7)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8)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세기본법」, 「관세법」에서 징수금액에 따라 그 소멸시효를 10년 및 5년으로 달리 정하고 있는 점⁹⁾, 「민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최대 10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¹⁰⁾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그 외 개정안은 금전채권의 주체를 ‘국가’로만 정하고 있는데, 현행 법상 교육감선거(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¹¹⁾을 고려하여 국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9)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10년

2. 제1호 외의 지방세: 5년

「관세법」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

10)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11)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 ⑥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5항 후단의 기한 안에 해당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안 제49조, 제49조의2, 제52조)은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등의 체납이 있는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등록은 무효로 하려는 것임.

< 공직선거법 개정안 >

현행	개정안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⑦ (생략)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候補者登録申請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受理하여야 하되, 登録申請書·政黨의 推薦書와 本人承諾書·選舉權者의 推薦狀·寄託金 및 第4項第2號 내지 제5호의 規定에 의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u>제47조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u> 은 이를 受理할 수 없다. 다만, 候補者의 被選舉權에 관한 證明書類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受理하되, 당해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機關 또는 團體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에 回報하여야 한다.	⑧ ----- ----- ----- ----- ----- -----제47조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제49조의2를 위반한 등록신청-. ----- ----- ----- ----- ----- ----- ----- ----- -----
⑨ ~ ⑮ (생략)	⑨ ~ ⑮ (현행과 같음)
<u><신설></u>	<u>제49조의2(후보자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체납이</u>

현행	개정안
제52조(등록무효) ① 候補者登録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候補者의 登 録은 無效로 한다. 1. ~ 4. (생략) ＜신설＞ 5. ~ 11. (생략) ② ~ ④ (생략)	<u>있는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다만, 시효의 완성으로 납부 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1. 제57조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u> <u>2. 제135조의2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u> <u>3. 제265조의2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u> 제52조(등록무효)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제49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된 것이 발견된 때</u> 5.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미반환자의 후보자등록을 제한함으로써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 반환을 원활하게 하려는 개정안들의 취지는 공감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미반환자에 대한 후보자등록 제한여부는 헌법상 보장되는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마지막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안 제280조)은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등의 체납자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직선거법 개정안 >

현행	개정안
<신설>	제280조(체납자의 명단 공개) ①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체납이 있는 때에는 체납자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시효의 완성으로 납부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7조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2. 제135조의2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3. 제265조의2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하기 이전에 체납자에 대하여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개할 수 없다. ③ 제57조제3항·제135조의2제6항 및 제265조의2제3항에 따라 징수를

현행	개정안
	<u>위탁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의 납부 및 체납실적을 통지하여야 한다.</u> <u>④ 공개대상자 통지 및 소명, 납부 및 체납실적의 통지,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u>

명단공표 제도는 의무불이행 등의 사실과 불이행자의 명단 등을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 의무불이행자의 명예, 신용 등에 불이익을 주고 간접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개정안에 따라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하여 ①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자의 공직적합성에 대한 판단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 ② 미반환금의 환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¹²⁾.

12) 중앙선관위는 반환기한까지 선거비용보전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의 인적사항·반환사유·미반환금액 등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2021. 5. 25.).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음.

<교육부>

-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제고 및 선거비용의 원활한 반환 등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며, 소멸시효 상향, 체납 시 후보자 등록 제한, 체납 사실 공개 등은 입법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선거관리위원회>

- **(소멸시효 상향)** 선거비용보전금 등 환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가채정법」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를 20년으로 상향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 **(후보자등록 제한 및 등록무효)**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고려하여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사람이 반환·보전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실시할 공직선거에의 입후보를 제한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함.
- **(체납사실의 인터넷홈페이지 공개)**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공직적합성 판단을 위한 정보제공, 선거비용보전금 등 환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에 대하여 공감함.

문 의 처

02)6788-5185